의안번호	2210964
의 뢰 인	엄태영 의원
회 답 일	2025.7.1.
추계번호	25F33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인의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과 보전산지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3년간 총 36.36억 원(연평균 12.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6~2028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임업인의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제8조제3항)	12.12	12.12	12.12	36.36	12.12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3항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규정에 대하여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조제3항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연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을 가정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최근 3년('21~'23) 연평균 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3년('21~'23) 연평균 취득세 면제 및 감면액은 12.12억 원 수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비용추계대상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지정된 보전산지를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1]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2]

○ 「산지관리법」에 지정된 보전산지의 취득은 99만㎡ 이내의 면적을 한도로 취득세 50% 경감 규정을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추가 취득에 대한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취득세 면제 및 감면액은 12.12억 원 수준

[표 2] 최근 3년 취득세 감면액 등: 2021~2023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연평균
감면액	14.34	11.45	10.58	12.12

자료: 통계청,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황」, 각 연도

1)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독림가인 모범, 우수, 자영 독림가와 법인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55세 미만으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등에 해당하거나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등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보전산지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3년간 총 36.36억 원(연평균 12.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6~2028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임업인의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제8조제3항)	12.12	12.12	12.12	36.36	12.12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